

제135회 임시회  
광진구의회

# 자양동 236번지일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

2010. 3. 16.

복지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

# 자양동 236번지일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    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27
----------	-----

2010. 3. 16.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. 3. 3. 광진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0. 3. 12.
- 다. 상정일자 : 2010. 3. 16.

## 2. 제안설명

- 가. 제안설명자 : 도시관리국장 박영규
- 나. 제안이유

- 자양동 236번지 일대는 건대지구중심의 배후주거지로서 20년이상 경과한 저층 노후·불량주택이 밀집해 있고, 도로·공원·녹지 등의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불량한 지역임.
- 토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재건축사업 통하여 정비기반시설인 도로·공원을 신설 또는 개량하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저층 노후·불량 주거지를 공동주택 중심의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하고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에 관하여 광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함.

## 라. 추진경위

- 2008.12.30. : 용역착수
- 2009. 4.21. : 1차 중간보고회 개최(구역계 범위 확정)
- 2009.10.01. : 2차 중간보고회 개최(정비계획안 확정)
- 2009.11.17. :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(안) 작성 완료
- 2009.11.20. ~ 2010.01.08 : 관련부서 협의 및 완료
- 2009.01.25. : 주민공람공고(공람기간: 1.26 ~ 3.02)
- 2010.01.27. : 주민설명회 실시

## 마.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(안)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결과

- 근거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
- 열람기간 : 2010.1.26 ~ 2010.3.02(36일간)
- 공고방법 : 구보, 구홈페이지, 동계시판
- 제출장소 : 광진구청 주택과

## 바. 재원조달방안 : 해당없음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위치 :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로 면적은 41,266.4m<sup>2</sup>이며,  
토지계획 이용계획에 따른 현황을 보면,  
택지가 78.1%인 32,234.8m<sup>2</sup>.  
정비기반시설 등 17.8%인 7,319.6m<sup>2</sup>  
존치시설은 4.1%인 1,712m<sup>2</sup>입니다.

용도지역 결정 내역중 주거지역의

제1종 일반주거지역 은 9.9%인 4,067.1m<sup>2</sup>

제2종 일반주거지역(7층) 은 0.2%인 81.2m<sup>2</sup>

제2종 일반주거지역(12층) 은 4.2%인 1,745.1m<sup>2</sup>

제3종 일반주거지역 은 85.7%인 35,373m<sup>2</sup>입니다

- 또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2010년 1월 26일부터 같은해 3월2일까지 36일간 구보와 구홈페이지 동계시판에 열람을 한 결과

공원하부에 지하주차장 건설방안 요구 건이 접수되었고,  
서울시의 주거정비과, 도시계획상임기획단, 공원조성과의 검토 의견이 있었고,  
광진경찰서 경비교통과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.

이와 관련 주민요구사항인 공원 지하에 지하주차장건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, 서울시 주관과에 사업과 관련 설명을 충분히 하여 주민의 의견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 하다 사료됩니다.

##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없음

#### 5. 토 론

- 찬성토론 : 없음
- 반대토론 : 없음

#### 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4인중 4인의 찬성으로 부대의견 불여 원안 동의  
[부대의견]

- 1) 공원하부 재래시장(노론산 시장) 지하주차장 건설을 요구하며,  
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, 상인들과 협의하여 원활히 추진 할 것을 요구함.

2) 동이로 상 영동대교에서 성수4거리 쪽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망함.

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